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2022. 4. 29.



고용노동부

# 순서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1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제 개편 .....	6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11
4.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15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	18
<붙임1>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	20
<붙임2> 재정안정화계획서 표준서식 .....	23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① 개정 배경

- 대규모 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년 사업장 도입률: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

## ② 개정 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합니다.
-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해야 했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를 대행합니다.
- 공단이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수료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3.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해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서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부담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 6. 기존 퇴직연금규약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입이 완료되기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신속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 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도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당해 연도 부담금은 납기 내(12월말)에 납부한 부담금입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사용자, 근로자)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은 의무 사항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 4. 14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현재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 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 11.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4~9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접수] 클릭
  - 신청자 이름, 연락처,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기입
  - 사전접수 완료
  - 업무개시 후 일괄가입 안내 DM 등
  -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후 정식 신규가입 진행
- (9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클릭]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동의서] 작성 [표준계약서] 확인
  - 가입완료
  - 가입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공단 DM 발송

##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 ① 개정 배경

- 사용자 책임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 지나치게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 수준에 미달하는 등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 ② 개정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시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고,
  -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위원 수는 5명 ~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해당 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 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의결사항, 의결 정족수 등)은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3. 모든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DB 가입자 수가 아닌 DB를 도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4.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어떠한 위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 최소적립금 충족 시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 최소적립금이 미달한 사업장은 ① 근로자대표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 5.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다수 득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6.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어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나요?

-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자산배분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자율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7.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올해 상반기 중 고시를 통해 전문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8.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담아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 작성이 어려운 경우 배포한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적립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한 벌칙 규정이 있나요?**

-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기한까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다면, 근로자 대표를 적립금운용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적립금운용위원회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포함 여부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2022년의 경우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재정검증 통보 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차 재정검증을 받아 최소적립금을 충족한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① 개정 배경

-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작성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미적립 시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개정 내용

- '22. 4. 14.부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재정검증 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 최소적립의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2. 최소적립의무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나요?

-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통보해야 하며,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결과에 기초하여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행령 시행('22.04.14) 이후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 4. 적립 부족 해소 조치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 5. 2022년부터 미적립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22년 적립 부족 해소 여부를 20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6.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7. 적립금 부족 여부 판단 시 참고 사례

- Q1. '22년말 기준 적립금이 부족했던 기업 A가 '23년 3억원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기준책임준비금도 2억원 증가한 경우
- ('22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0억원, 최소적립금 10억원, 적립금 1억원 →
  - ('23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최소적립금 12억원, 적립금 4억원
- A1. '22년말 부족비율이 90%였으므로 '23년말 적립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로 적립비율은 33.3% 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Q2. '22년말 기준 적립금이 부족했던 기업 A가 '23년 3.3억원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기준책임준비금이 2억원, 최소적립금이 4.8억원 증가한 경우
- ('22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0억원, 최소적립금 6억원, 적립금 1.5억원 →
  - ('23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최소적립금 10.8억원, 적립금 4.8억원
- A2. '22년말 부족비율이 45%였으므로 당초 적립비율 15%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인 15%를 더하여 '23년말 적립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적립비율은 40% 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Q3. '22년말 기준 적립금이 부족했던 기업 A가 '23년 적립부족을 해소하였으나, '24년 다시 적립금이 부족해져서 '25년 적립부족을 해소한 경우
- ('22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0억원, 최소적립금 10억원, 적립금 7억원 →
  - ('23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최소적립금 12억원, 적립금 12억원 →
  - ('24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6억원, 최소적립금 16억원, 적립금 12억원 →
  - ('25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6억원, 최소적립금 16억원, 적립금 16억원
- A3. 기업 A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4.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① 개정 배경

-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개정 내용

-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 ① 개정 배경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목적은 퇴직급여 지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개정 내용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은 1명 이상의 전문강사를 두어야 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1. 전문교육기관이 두어야 하는 전문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 올해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전문강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안)에 의하면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원·명예교수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강의실 등 물적 요건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인가요?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우편, 교육자료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법령에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적요건 이외에 별도의 물적 요건을 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 3. 전문기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은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공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적립금운용계획서(이하 '계획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재 및 장래의 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수익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준수사항)**

- 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② 금융상품 발행회사 등과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 규범에 반하거나 분석 및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계획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용한다.
- ②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립금 운용의 원칙)**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1. 퇴직연금 관련 법령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준수
- 2. 적립금 투자의 안정성 확보
- 3. 퇴직급여 지급 등 유동성 충족
- 4. 목표수익률의 달성

**제5조(적립금 운용의 목적)** 적립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금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금부채의 지급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것
- 2. 퇴직자 발생 시 원활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

**제6조(목표수익률)** \_\_\_\_년 목표수익률은 \_\_\_\_%로 한다.

## 제7조(자산배분정책 수립) < 사용자 자율 작성 >

※ 원칙: 위원회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자산유형별 기대수익률, 과거 수익률 및 동 수익률의 표준편차, 상관관계 등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산배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적립금을 특정한 운용방법에 집중되지 않게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산배분정책의 심의 및 조정)

- ① 위원회는 자산배분정책 조정 여부를 1년마다 재심의한다.
- ② 적립금 운용부서는 경제상황이나 시장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운용성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자산배분정책을 벗어나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 운용부서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경제상황의 급변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배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적정유동성 확보) < 사용자 자율 작성 >

※ 원칙: 적립금 운용부서는 적립금의 운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용방법의 선정)

- ① 투자대상자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하위법령에서 명시한 적립금 운용 방법 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원리금보장상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평가(자본 적정성, 부실징후 등 확인)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평가한 후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실적배당형 상품은 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정량적 측면(기간수익률, 총자산금액, 업종별 투자비율, 총보수비용 비율 등)과 정성적 측면(운용계획,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④ 적립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및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는 연 1회 이상 운용관리기관에게 신규 운용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용성과의 평가)

- ①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금 운용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운용성과는 제9조의 목표수익률과 각 자산별 수익률 및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운용방법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운용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인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된 경우에는 운용상품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운용성과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적립금 운용담당자의 의무와 면책)

- ① 적립금 운용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적립금 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적립금운용담당자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과 차등하여 특별히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표준서식

동 계획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소적립의무를 미준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I.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지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연락처	
결산연월	(YYYYMM 형식)	재정검증결과 통보일자	(YYYYMMDD 형식)

II. 재정검증결과

① 기준책임준비금	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①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②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
② 법정 최소적립비율	%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율 <sup>1)2)</sup>
③ 최소적립금	원	[① × ②] <sup>3)</sup>
④ 평가적립금액	원	사업연도말 기준 <sup>4)</sup> 적립금 합계
⑤ 부족금액	원	③ - ④
⑥ 부족비율	%	② - [(④/①) × 100]
⑦ 목표적립비율	%	[(④/①) × 100] + [⑥ × 1/3] 이상의 값

※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연도말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결과를 그대로 기재하되,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별 자사 적립금액만으로 재정검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간사기관 지정 후 재정검증을 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1)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비율로 산출하되,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정 최소적립비율은 90% 또는 100% 중 어느 하나(2021년까지는 90%, 2022년부터는 100%) 적용

$$\text{산출식} = \frac{[(\text{평균 과거근로기간} \times \text{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90 \text{ 또는 } 100\% \text{ 중 어느 하나}))]}{\text{가입기간 전체}}$$

- 2)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를 유지하여야 함
- 3)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경우, 2022년 사업연도 종료 이후 ①기준책임준비금과 ③최소적립금은 동일한 값으로 작성
- 4) 재정검증 기준일자인 결산연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적립금액 작성

### III. 재정안정화 계획

#### ① 가입 및 적립 현황

구분	사업연도(Y년)	전년대비 증감율
가입자 수(명) <sup>4)</sup>	130명	△30%(100명)
30일분 평균 임금 합계(천원)	375,000천원	△50%(250,000천원)
가입기간 전체(년) <sup>5)</sup>	4.40년	△10%(4.00년)
적립비율(%) 추이	(Y-1)년	(Y-2)년
	%	%

4) 사업연도말 기준 해당 사업장 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 수 의미하므로 I. 사업장 개요에서 작성한 상시근로자수와 다를 수 있음

5) 사업연도말 기준 해당 사업장 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근로자의 평균 가입기간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그대로 기재

#### ②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 계획

납입예정일 <sup>6)</sup>	납입예정금액	예상적립비율(누적) <sup>7)</sup>	자금조달방안 <sup>8)</sup>
(YYYY11DD)	원	%	<input type="checkbox"/> 외부조달(여신, 차입, 증권 발행 등) <input type="checkbox"/> 내부조달(추후 영업이익, 비용절감 등) <input type="checkbox"/> 내부조달(기존 사내유보금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YYYY12DD)	원	(목표적립비율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외부조달(여신, 차입, 증권 발행 등) <input type="checkbox"/> 내부조달(추후 영업이익, 비용절감 등) <input type="checkbox"/> 내부조달(기존 사내유보금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장의 실제 납입 계획에 맞춰 작성하되,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하여야 함. 부족분 해소 이행 기간이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님에 유의할 것

6) 납입주기(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에 따라 납입예정일 항 추가하여 작성

7) 예상적립비율은 [당초 적립비율 + {(납입예정금 총액/재정검증 시의 기준책임준비금) × 100}]의 식에 따라 산출하되, 마지막 항의 예상적립비율은 [당초 적립비율 + 부족비율 × 1/3]을 초과하여 기재

8) 열거된 자금조달방안에서 선택(중복 허용)하되, 기타는 위 예시에 준하여 작성

( 00산업 )의 대표 ( 000 ) 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직접 ( 작성하고 ) 근로자 대표에게 ( 통지하였으며 ), 부족비율 미해소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 인지하였습니다 ).

. . .

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